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국군포로 등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 등 〉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02호)

2025.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국군포로 등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안 제15조의6) ..... | 3  |
| 2.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안 제15조의7) .....      | 8  |
| ※ 참고자료 .....                          | 1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7. 21.
3. 회 부 일 : 2025. 7. 2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국제사회에서도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억류가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으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2023년 12월 19일 및 2024년 12월 17일 각각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8/218호 및 79/181호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실현을 촉구하였으며, 2025년 6월 25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적·비

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특별보고관 및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6·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전쟁포로 및 강제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음.

한편,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1조), 작년 12월 20일 일부개정으로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었음(제11조의2).

이에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국군포로 등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안 제15조의6)

- ☐ 개정안은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u>제15조의6(기념사업) 정부는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u> |

- ☐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억류국 등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 등록 국군포로는 80명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sup>1)</sup>되고 있음.

1)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

[등록 국군포로 현황(2025. 8월 기준)2]

(단위: 명)

| 연도 | '94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24 | 계  |
|----|-----|-----|-----|-----|-----|-----|-----|-----|-----|-----|-----|-----|-----|-----|-----|---------|----|
| 인원 | 1   | 1   | 4   | 2   | 9   | 6   | 6   | 5   | 14  | 11  | 7   | 4   | 6   | 3   | 1   | -       | 80 |

자료: 국방부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을 규정하기 제정되었는데, 현행법 제3조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5년 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과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정책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방부는 등록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기여와 희생에 상응하는 각종 지원금 등의 대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 및 송환 대책 마련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

2) 2025년 8월말 현재 총 80명(사망 72명, 생존 8명)이 국군포로로 등록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등록실적이 없음.

## [등록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 현황]

| 구 분   | 산정기준                          | 지급액*                                                               |
|-------|-------------------------------|--------------------------------------------------------------------|
| 보 수   | 60세까지 산정                      | 약 100만원 (병장 기준)                                                    |
| 위로지원금 | 일시지원금 (초기 정착 지원금)             | 약 2.47억원                                                           |
|       | 월지원금 (생활 지원금)                 | 약 월 617만원                                                          |
| 주거지원금 | 임대주택 제공                       | 보증금 약 4,000만원<br>월세 약 48만원(실비)                                     |
| 유족지원금 | 귀환포로 사망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   |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의료지원비 | 병원 진료비 및 처방약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연 1,500만원 한도                                                       |

자료: 국방부('25년 3등급 병 출신 국군포로 기준)

□ 개정안은 국군포로 등에 대한 대우의 일환으로 국군포로 등에 대한 기념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노력이 제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sup>3)</sup>에는 정부로 하여금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시납북자에서 군인은 제외되고 있어<sup>4)</sup>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군포로 등에 대한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다만, 현재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sup>5)</sup>에서는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및 전쟁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군포로 등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 수행사업]

1. 전쟁기념관과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현행법에는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의

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5)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2조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음.

송환 의무, 귀환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등록 및 정착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념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규정은 부재하고,

현재 생존 귀환포로(6명)가 고령(평균연령 94세)인 점을 고려하면 수년 내 국군포로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보전 및 기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로 관련 기록물 발간, 전시관 개선 등의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이미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 지급과 의료/주거지원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 관련 기념사업과 기념일에 대한 지원은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2.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안 제15조의7)

- 개정안은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매년 11월 26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7).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p>제15조의7(국군포로 기억의 날) ①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군포로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억류국 등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 등록 국군포로는 80명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sup>6)</sup>되고 있음.

□ 국군포로 문제는 현행법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대책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색상황, 북한의 부인 및 비협조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으로,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 대우와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현행법의 목적<sup>7)</sup>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기억의 날을 국군포로였던 조창호 소위<sup>8)</sup>가 1994년 10월 23일에 탈북·귀환한 후 전역식을 개최한 날인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첫째, 국가를 위한 국군포로의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외면과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정당한 예우에서 소외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통해 이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위로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적 예우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

6)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

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조창호(趙昌浩, 1930.10.2.~2006. 11. 19.)는 대한민국의 군인(육군 중위)으로, 6.25 전쟁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되어 전사자로 처리되었다가 43년만인 1994년 10월 23일 대한민국에 귀환한 인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둘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sup>9)</sup>에서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sup>10)</sup>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sup>11)</sup>하고 있는데, 현재 전시납북자에서 군인은 제외되고 있어<sup>12)</sup>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부가 기념을 지정하려 할 때,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sup>13)</sup>, 현재 현충일(6월 6일), 6·25전쟁일(6월 25일) 및 국군의 날(10월 1일) 등의 기념일과 개정안의 지정일 간

- 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10) 1950년 6월 28일은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민간인을 납치하기 시작한 날임.
- 11) 2024.12.20. 개정
- 1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2호: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13)

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와 존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쟁·군인 관련 기념일 현황]

| 기념일     | 날짜     | 주관 부처 | 행사 내용                                                          |
|---------|--------|-------|----------------------------------------------------------------|
| 현충일     | 6. 6.  | 국가보훈부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6·25전쟁일 | 6. 25. | 국가보훈부 |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국군의 날   | 10. 1. | 국방부   |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과 ‘현충일’ 등 타 국가기념일의 기념대상과 일부 중복 우려가 있으나 국군포로의 특별한 희생을 기리고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별도 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기념일 지정 취지에 동의하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북자 기념사업’ 및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6월 28일)’에서 군인은 기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군포로 관련 별도 추진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주관부처(국방부 군비통제확산정책과)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308 |

## ※ 참고자료

- 국군포로 현황 : 6.25전쟁 후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이며, 군인 실종자 41,971명 중 '97년 10월까지 확인절차\*를 거쳐 전사처리한 22,562명을 제외한 **19,409명이 6.25전쟁 중 미송환 국군포로로 추정**

\* 내무부 조사와 군적 확인 및 대조, 전산화 자료확인, 유가족 신고 및 증언자료를 통해 이중 등록자, 전·공상자 및 형 확정자, 포로·실종자 인정 불가자 등의 인원 제외

-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국군포로는 2명

- 국군포로 귀환 현황: **총 80명('25.7월 기준 6명 생존)**

| 연도 | '94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24 | 계  |
|----|-----|-----|-----|-----|-----|-----|-----|-----|-----|-----|-----|-----|-----|-----|-----|---------|----|
| 인원 | 1   | 1   | 3   | 3   | 9   | 6   | 6   | 5   | 14  | 11  | 7   | 4   | 6   | 3   | 1   | -       | 80 |

-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등록현황 : 총 115세대

| 연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계   |
|----|-----|-----|-----|-----|-----|-----|-----|-----|-----|-----|-----|-----|-----|-----|-----|-----|-----|-----|-----|
| 세대 | 50  | 14  | 7   | 12  | 3   | 5   | 3   | 8   | 4   | 1   | -   | 4   | -   | 1   | -   | 1   | -   | 2   | 115 |

-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 지원

- (귀환포로) △ 위로지원금 지급 : 일시지원금 약2.47억원, 월 지원금 약617만원, △주거지원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8만원 수준, △의료지원 : 연 15백만원 내, △기초생활 수급자(1명) 분기별 5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포로가족) 1세대당 4,790만원의 지원금 지급

- 국군포로 관련 기념사업 내역

- 전쟁기념관 내 '국군포로 전시실' 개관\* 및 운영('24.7월~)

\* 국군포로 관련 각종 사료 및 역사 전시를 통한 대국민 홍보 및 희생과 헌신 추모 공간

-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 : 국방부 주관으로 '01년 ~ '24년 기간 총 21회 실시\*, 연인원 총 1,317명 참석(부대 및 각종 안보기념관, 안보현장 위주 방문)

\* 2002 월드컵, 코로나 21 발병 시기 同 행사 미개최

- 국군포로 관련 서적 발간 :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국방부 정책기획관실 '07년 발간), △「국군포로 스토리북」(북한인권센터 '19년~'23년 발간(국방부 후원), 총 9권)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4. 11. 26.>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 번호 | 기념일                    | 날짜           | 주관 부처         | 행사 내용                                                   |
|----|------------------------|--------------|---------------|---------------------------------------------------------|
| 1  | 2·28민주운동 기념일           | 2. 28.       | 국가보훈부         |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
| 2  | 납세자의 날                 | 3. 3.        | 기획재정부         |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
| 3  | 3·8민주의거 기념일            | 3. 8.        | 국가보훈부         |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
| 4  | 3·15의거 기념일             | 3. 15.       | 국가보훈부         |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5  | 상공의 날                  | 3월 셋째<br>수요일 | 산업통상<br>자원부   |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6  | 서해수호의 날                | 3월 넷째<br>금요일 | 국가보훈부         |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
| 7  | 4·3희생자 추념일             | 4. 3.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
| 8  | 예비군의 날                 | 4월 첫째<br>금요일 | 국방부           |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9  | 식목일                    | 4. 5.        | 농림축산<br>식품부   |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10 | 보건의 날                  | 4. 7.        | 보건복지부         |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
| 11 | 대한민국<br>임시정부 수립<br>기념일 | 4. 11.       | 국가보훈부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12 | 4·19혁명<br>기념일          | 4. 19.       | 국가보훈부         |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13 | 장애인의 날                 | 4. 20.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14 | 과학의 날                  | 4. 21.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5 | 정보통신의 날                | 4. 22.       | 과학기술          |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                                                                              |
|----|------------------|--------------|-------------------------|------------------------------------------------------------------------------|
|    |                  |              | 정보통신부<br>· 방송통신<br>위원회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br>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6 | 법의 날             | 4. 25.       | 법무부                     |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br>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 충무공 이순신<br>탄신일   | 4. 28.       | 문화체육<br>관광부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br>는 행사를 한다.                                          |
| 18 | 순직의무군경<br>의 날    | 4월 넷째<br>금요일 | 국가보훈부                   |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br>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19 | 근로자의 날           | 5. 1.        | 고용노동부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br>높이는 행사를 한다.                                       |
| 20 | 어린이 날            | 5. 5.        | 보건복지부                   |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br>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
| 21 | 어버이 날            | 5. 8.        | 보건복지부                   |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br>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22 | 동학농민혁명<br>기념일    | 5. 11.       | 문화체육<br>관광부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br>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23 | 스승의 날            | 5. 15.       | 교육부                     |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스승 공<br>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24 | 세종대왕 나신<br>날     | 5. 15.       | 문화체육관<br>광부 · 국가<br>유산청 |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br>신과 애민사상을 계승 · 발전시키는 행사를<br>한다.                     |
| 25 | 5·18민주화운동<br>기념일 | 5. 18.       | 국가보훈부                   |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26 | 부부의 날            | 5. 21.       | 여성가족부                   |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br>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27 | 성년의 날            | 5월 셋째<br>월요일 | 여성가족부                   |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br>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
| 28 | 우주항공의 날          | 5. 27.       | 우주항공청                   | 우주경제 시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주항<br>공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29 | 바다의 날            | 5. 31.       | 해양수산부                   |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br>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br>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0 | 의병의 날            | 6. 1.        | 행정안전부                   |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br>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31 | 환경의 날            | 6. 5.        | 환경부                     |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br>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              |              |                               |                                                                                                  |
|----|--------------|--------------|-------------------------------|--------------------------------------------------------------------------------------------------|
| 32 | 현충일          | 6. 6.        | 국가보훈부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3 | 6·10민주항쟁 기념일 | 6. 10.       | 행정안전부                         |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 6·10만세운동 기념일 | 6. 10.       | 국가보훈부                         |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35 | 6·25전쟁일      | 6. 25.       | 국가보훈부                         |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36 | 철도의 날        | 6. 28.       | 국토교통부                         |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7 | 정보보호의 날      | 7월 둘째<br>수요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행정안전부·<br>국가정보원 |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8 | 북한이탈주민의 날    | 7. 14.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39 | 푸른 하늘의 날     | 9. 7.        | 외교부·환경부                       |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40 | 국군의 날        | 10. 1.       | 국방부                           |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41 | 노인의 날        | 10. 2.       | 보건복지부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
| 42 | 세계 한인의 날     | 10. 5.       | 재외동포청                         |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43 | 재향군인의 날      | 10. 8.       | 국가보훈부                         |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4 | 스포츠의 날       | 10. 15.      | 문화체육                          |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스포                                                                          |

|    |                |                   |                         |                                                                  |
|----|----------------|-------------------|-------------------------|------------------------------------------------------------------|
|    |                |                   | 관광부                     | 츠 행사 및 대회 개최와 더불어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45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 10. 16.           | 행정안전부                   |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46 | 문화의 날          | 10월 셋째 토요일        | 문화체육 관광부                |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7 | 경찰의 날          | 10. 21.           | 행정안전부                   |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8 | 국제연합일          | 10. 24.           | 외교부                     |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49 | 교정의 날          | 10. 28.           | 법무부                     |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50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 10. 29.           | 행정안전부<br>· 산업통상<br>자원부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
| 51 | 금융의 날          | 10월<br>마지막<br>화요일 | 금융위원회                   |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
| 52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11. 3.            | 교육부·<br>국가보훈부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한다.               |
| 53 | 농업인의 날         | 11. 11.           | 농림축산<br>식품부             |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54 | 순국선열의 날        | 11. 17.           | 국가보훈부                   |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55 | 소비자의 날         | 12. 3.            | 공정거래<br>위원회             |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56 | 무역의 날          | 12. 5.            | 산업통상<br>자원부             |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57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 12. 27.           | 과학기술정<br>보통신부·<br>산업통상자 |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  |                     |  |
|--|--|--|---------------------|--|
|  |  |  | 원부·원자<br>력안전위원<br>회 |  |
|--|--|--|---------------------|--|

비고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57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